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2. 9. 10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시설을” 을 “센터를”로 함(안 제6조제2항)
- 나. “시설” 을 “센터”로, “제22조의2 및 제23조”를 “제21조 및 제21조의2”로 함(안 제6조제3항)
- 다. “5명 이상 10명” 을 “5명 이상 15명 이하의”로 함(안 제8조제1항)
- 라. “이내로 구성한다”를 “위원으로 구성한다”로 함(제8조제1항)

#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시설을” 을 “센터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설” 을  
“센터”로, “제22조의2 및 제23조” 를 “제21조 및 제21조의2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5명 이상 10명” 을 “5명 이상 15명 이하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이내로 구성한다” 를 “위원으로 구성한다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수탁자 선정)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능력, 사업수행능력,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수탁자 선정)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—————— 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」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.</p> <p>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,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수탁자 선정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—————— 센터를 —————— .</p> <p>③ —————— 센터 —————— .</p> <p>————— 제21조 및 제21조의2————— .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	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	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복지지원 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5명 이상 10명 -----  
-----.

② ----- 해  
----- 해당하는 사람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해당하는 사람 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위원 중 -----  
-----.

④ -----  
-----.  
----- 전임 위원의 남은 -----  
-----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~ ⑦ (개정안과 같음)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수탁자 선정)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능력, 사업수행능력,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수탁자 선정)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」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.</p> <p>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하며,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수탁자 선정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센터를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센터----- ----- ----- ----- 제21조 및 제21조의2----- -----.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	